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-1845호

# 중계문화보건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중계문화보건센터 시설 내 이용자 보호,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1. 4.

노 원 구 청 장 


1. 설치목적 : 중계문화보건센터 내 이용자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리 등

2. 관련근거
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6. 11. 4. ~ 2026. 11. 24.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노원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nowon.go.kr)

5. 설치장소

| 시설명 | 설치장소 | 수량 | 감시구역 | 촬영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중계문화보건센터 |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3 | 31 | 건물 내·외부 및 주차장 | 24시간 |

6.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(개인정보)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○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

○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 문화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기간 : 2026. 11. 4. ~ 2026. 11. 24. (20일간)

○ 기재사항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등

○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

※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, 팩스는 송부 후 유선확인 필요

○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노원구청 문화도시과

- 팩스 : 02-2116-4630
- 전화 : 02-2116-7133

**※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**

# 의 견 제 출 서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 업 명 | 중계문화보건센터 CCTV 설치 | | | |
| 의견 제출자 | 성 명<br>(개인/단체) | | 생년월일 | |
| | 주 소 | | 전화번호 | |
| 개인정보취급 |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□ 동의 | | | |

**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**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노원구청장 귀하